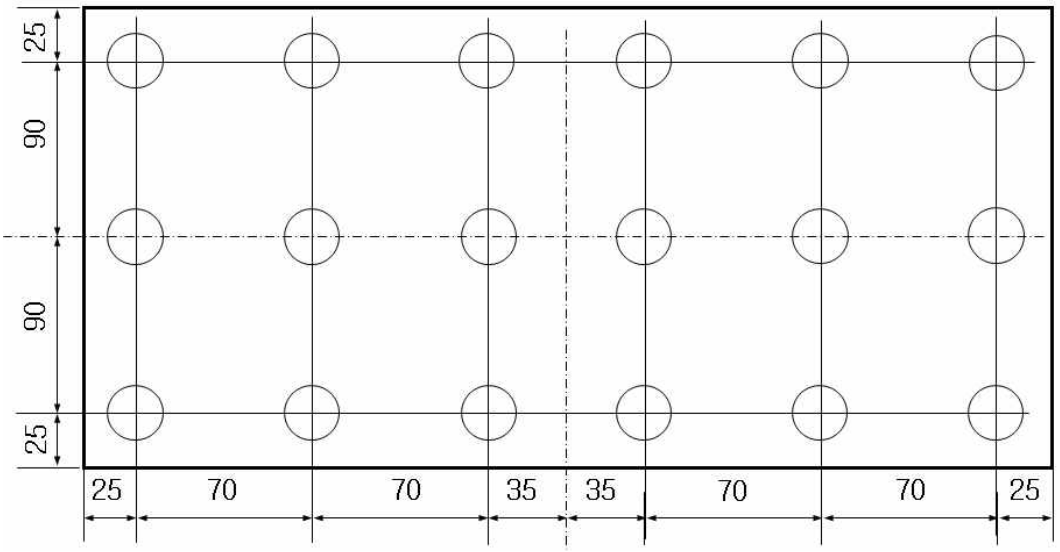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 <개정 2021. 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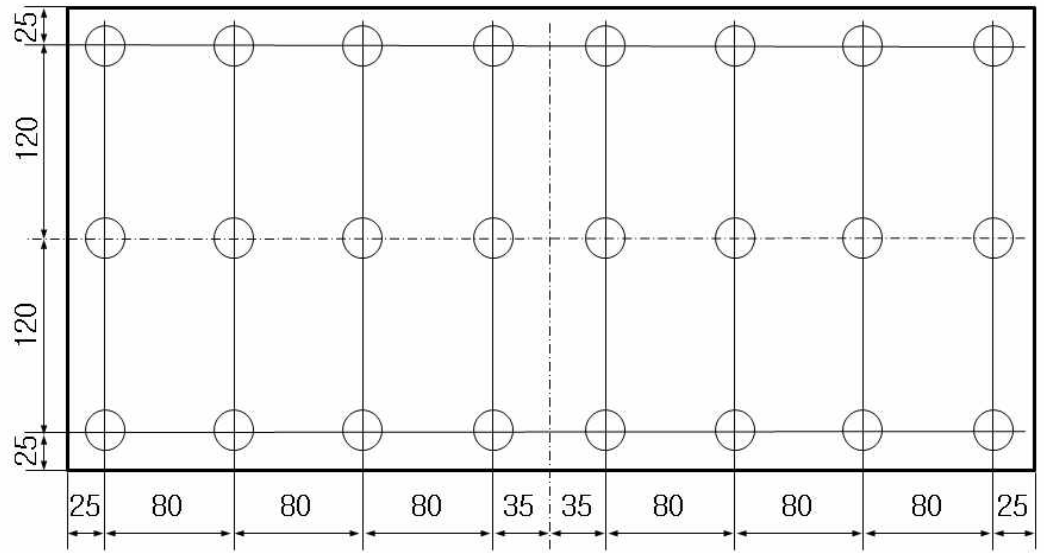
등록번호판 위의 조도기준(제158조 관련)

1. 등록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조도측정점

가. 등록번호판 규격이 400×220㎜인 경우 시험판의 규격(400×230㎜)



나. 등록번호판 규격이 600×280㎜인 경우 시험판의 규격(600×290㎜)



2. 조도기준

가. 번호등의 조도 시험방법

1) 휘도계[광원(光源) 단위 면적당 밝기 측정기] 측정부에서 시험품까지의 측정거

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2) 시험판의 규격 및 조도 측정점에 따라 최소 70%의 반사율을 갖는 깨끗한 흰색의 압지를 붙힌 테스트 스텐드를 실차상태와 같은 위치로 고정한다.

3) 휘도계 측정부는 테스트 스텐드 측정면의 법선방향에서 휘도계의 시야 안에 측정면의 압지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조정한다.

4) 시험품에 시험전압을 가하여 점등하고 각 측정점에서의 휘도를 측정, 기록한다.

5) 각 측정점에서의 휘도값은 다음 식에 의하여 조도로 환산한다.

$E = \Pi / \rho \times L$ 여기서, E = 조도 (Lux)

Π = 3.14

ρ = 압지부착 측정면의 반사율

L = 휘도 (Cd/m^2)

나. 번호등의 입사각 측정방법

1) 1개의 램프가 등록번호표를 조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표 평면의 가장 먼 지점과 램프의 발광면 가장자리로부터의 입사광 각도를 측정, 기록한다.

2) 두개의 램프가 등록번호표를 조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램프가 조명하도록 설계된 등록번호표 부분의 가장 먼 지점과 입사광과의 각도를 측정, 기록한다.

다. 번호등의 직후방의 직사광선 여부측정

번호등의 광원중심을 기준으로 차량중심선에 평행하고 수평한 높이의 번호등의 직후방에서 직사광선이 보이는지를 확인 · 기록한다.